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가합51862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원일특강

피고 A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변론 종결 2017. 4. 19.

판결 선고 2017. 5. 19.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1/173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주식회사 원일특강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1/173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A 주식회사의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아래의 각 해당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1	2009. 3. 6.	100,000,000원 (72,000,000원으로 변경됨)	2010. 3. 5. (2016. 2. 26.로 연장됨)	주식회사 우리은행 (이하 주식회사를 생략한 각 회사명만 기재한다)	이하 '이 사건 제1 보증'이라 한다
2	2012. 7. 26.	450,000,000원 (425,000,000원으로 변경됨)	2013. 7. 25. (2016. 2. 26.로 연장됨)	우리은행	이하 '이 사건 제2 보증'이라 한다
3	2013. 4. 12.	180,000,000원 (170,000,000원으로 변경됨)	2014. 4. 11. (2016. 4. 8.로 연장됨)	중소기업은행	이하 '이 사건 제3 보증'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C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한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0%이다.

○ C의 대표자 B은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체결시 C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C은 보증일 무렵 위 각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 500,000,000원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 C은 2015. 12. 17.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위 각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C을 대위하여 2015. 12. 31. 우리은행에 498,299,509원을, 2016. 1. 19. 중소기업은행에 164,731,407원을 각 변제하였다.

○ 한편 원고는 2015. 12. 31. 회수한 13,371,290원과 2016. 1. 19. 회수한 1,029,300원을 이 사건 제1 보증에 따른 구상채권 원금에 충당하였고, 위 회수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1,164원[= {13,371,290원 × 12% × 1/365(2015. 12. 31. ~ 2015. 12. 31.)} + {1,029,300원 × 12% × 20/365(2015. 12. 31. ~ 2016. 1. 19.)}],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다.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 C의 대표자 B은 2015. 6. 8.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11/173 지분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채무자를 C,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6. 10. 피고 A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 또한, B은 2015. 12.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원일특강(이하 '피고 원일특강'이라 한다)과 사이에 채무자를 B, 채권최고액을 2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5. 12. 2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의 회생신청 및 파산

C은 2015.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3. 15.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이유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2016. 5. 18. C에 대하여 파산 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2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각 보증의 연대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48,641,490원 [= 우리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498,299,509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64,731,407 - (2015. 12. 31. 회수금 13,371,290원 + 2016. 1. 19. 회수금 1,029,300원) + 확정지연손해금 11,164원] 및 대위변제금 잔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일 또는 약 6개월 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점, ○ C은 2012.경부터 중국 시장의 철강재 수요감소로 인하여 이익이 감소하였고, 매출처들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5. 11.경부터 영업을 중단한 점, ○ 아래 3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위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B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3.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는데, 2015. 12. 30.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D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403,466,400원이었는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같은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반면 B의 2016. 1. 19.경 소극재산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액이 합계 978,66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채무 170,000,000원 +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대출채무 30,000,000원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324,000,000원 + 우리은행에 대한 보증채무 441,074,000원 + 하나캐피탈에 대한 보증채무 13,586,000원)이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도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B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채무도 B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으로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이 더욱 심화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된다.

4.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 A 피고 A는 2015. 3.경 C에 약 26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하면서 그 자재대금의 담보를 위해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A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2) 피고 원일특강 피고 원일특강은 2011. 3.경부터 C에 자재를 공급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자재대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C이 담보 제공을 지연시키던 중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지하고서 C의 대표자 B에게 담보 제공을 다시 요청하여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 원일특강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 A 을나 2호증의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가 2015. 3.경 C에 에이치빔(H-BEAM) 등 총 262,780,507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사실, 2015. 3. 31. 당시 피고 A의 C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액이 330,370,986원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피고 A가 C에 에이치빔 등 총 262,780,507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2015. 3.경부터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6. 8.까지 사이에 발생한 피고 A의 C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액은 25,723,775원(= 2015. 4. 30.자 25,086,710원 + 2015. 6. 5.자 637,065원)에 불과하였고, 2015. 6. 1. C이 외상매출금 30,000,000원을 변제하였기 때문에 피고 A가 C에 에이치빔 등의 자재를 공급한 2015. 3.경부터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6. 8.까지 사이에는 오히려 피고 A의 C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액이 감소한 점, ○ 피고 A는 C에 에이치빔(H-BEAM) 등 총 262,780,507원 상당의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한 2015. 3.경으로부터 약 3개월이 경과한 2015. 6. 8.에 이르러서야 C과 사이에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6. 10.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 ○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6. 8. 이후에는 피고 A의 C에 대한 외상매출금채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A의 악의에 대한 추정을 반복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로 인하여 다른 일반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 원일특강 피고 원일특강이 선의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5. 12. 7.로부터 불과 10일이 경과한 2015. 12. 17. C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점, ○ 피고 원일특강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가 C에 공급한 자재대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결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원일특강은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원일특강의 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사해행위의 취소

결국 B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재판장판사이상윤

판사함철환

판사박노을

별지